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06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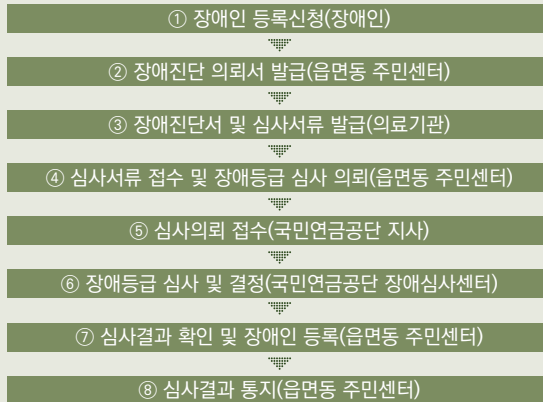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 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19년 4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2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7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차상위계층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포-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등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온라인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6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 2. 내용**
- | 대상 | 0~36개월 미만 | 36~86개월 미만 |
|-----|-----------|------------|
| 지급액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지원

※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원격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중증장애학생 우선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종일반 운영(방과 후 학교와 종일반 중복지원 불가)
-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의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동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3. 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이압	blind.nise.go.kr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일자리가 필요할 때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74만 5,150원 12월 : 163만 6,000원
			일 4시간 주 5일	87만 2,580원 12월 : 82만 6,65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6만 7,60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1만 3,740원 12월 : 104만 5,50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09만 3,850원 12월 : 102만 7,050원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 1.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
(중증 및 여성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 우선)
- 2. 내용**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참여
※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생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조건)
- 3.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 : 수시 신청
 - 한국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의 훈련 : 별도의 모집기간에 신청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력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세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2개소), 맞춤형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5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형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가족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 훈련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월 10만 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준비금 1회 4만 원 ▪ 훈련수당 월 20만 원 ▪ 자격취득수당 1회 5만 원

-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1.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60만 원 지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17년 발생분 까지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 원	28만 원		
	만 5년 초과	15만 원	20만 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지만 한시적 지원				
2018년 발생분 부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로 지원
 ※ 중증여성은 2016년도 발생분부터 60만 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 원 적용)

-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18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2%, 민간사업주 2.9%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 지원

-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2.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용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 장애인용 작업 장비·공구,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5년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준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무료 지원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3.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초과 100%
(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
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신설)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최대 1,000만 원(청년 창업자 2,000만 원)이내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실 →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근로 지원인 지원

-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은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세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 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검사비 지원

1.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5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3. 방법 장애검사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 심사 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2. 내용 2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근육병증 등) 단, 보행용보조기구 및 목욕의자는 1~4급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구청) → 교부 결정

4.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언어발달 지원

-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1. 대상**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5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 2. 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 최대 700만 원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후 3년간 105만 원 지원
-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1.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 2. 내용**
- 월 44/88/120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19.3월부터)
-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재활 서비스

-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7만 2,807원, 지역 29만 7,628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1. 대상 만12세~만17세 재학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2. 내용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19. 하반기 예정)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 프로그램,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프로그램 등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1.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2.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귀복귀를 지원
※ 현재 전국 3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3.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 4. 문의**
- 서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울 보라매병원 ☎02-870-2071)
 -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충남대학교병원 ☎042-333-2229)
 - 경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4)

장애친화 건강검진

- 1.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2.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8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 3.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건강검진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아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
-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서울]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 1. 대상** 등록장애인
-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 장애인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 장애인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연합회(☎031-691-7782, 보조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활동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53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3만 원~353만 9,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21만 9,000원	
3등급	92만 1,000원	
4등급	61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1. 대상**
 - 무료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 등록장애인
-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3. 방법** 시군구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저소득층
-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1.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
-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6,92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교통사고 피해자(피해자 사망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가진 자) - 교통사고 피해사건.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2. 내용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교통사고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가진 자) - 교통사고 피해사건.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1. 대상

시청각장애인(저소득층 우선보급)
2. 내용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보급
3. 방법
 - 시청각장애인용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 장애인 방송(자막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 자막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속도조절,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장 입학 및 순회교육

- 1. 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 3. 방법** 국립재활원에 신청
-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자주 하는 질문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 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 1. 대상** 등록장애인
-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반영
- 3.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이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 대상**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2. 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 3. 방법**
-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 행정안전부(☎02-2100-339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1. 대상 등록장애인
-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1. 대상 등록장애인
- 2. 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1. 대상** 등록장애인
-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4.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수화통역센터

-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2.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화통역, 일반인 수화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3. 방법** 지역별 수화통역센터에 신청
-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나 민원24 (www.minwon. go.kr)로 온라인 신청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1~3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1~3급)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

임신·출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임신준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6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87	
임신기간	영양플러스	8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88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8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9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6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90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88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9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2	
출산비지원	요양비(출산비) 지원	89	
	출산비용 지원	90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11	
출산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11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10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97	
	육아종합지원센터	108	
	육아휴직 급여 지원	96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98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98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95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229
	발달재활 서비스	228
	장애검사비 지원	225
	장애인 의료비 지원	222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226
	장애친화 건강검진	23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30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2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207
양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204
	아이돌봄서비스	10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4
	장애아동수당	198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06
	장애아동 양육수당	203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2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205
교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20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34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장애인용 TV)	235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06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237
	장애인 정보화교육	208
주거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0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33
생활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233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무료 법률 구조제도	235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236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38
	의료급여 제도	160
	장애수당	19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34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22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225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40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238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장애인연금	200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239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2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3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1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40
돌봄 (안전·활동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217
	수화통역센터	24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22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33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20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34
	장애인 보장구 급여	22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26
	장애인 복지관	241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4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231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231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41
	장애인 체육시설	242
	장애인 활동지원	232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21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22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69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229
	임신·출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2
출산비용 지원		90
고용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17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215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2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14
	장애인 일자리 지원	20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214
	장애인 창업육성	22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19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1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21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213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주요기관	연락처
BC카드	☎1899-4651
DB손해보험	☎1588-0100
KB국민은행	☎1599-9999
KB손해보험	☎1544-0114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K-스타트업	☎1357
LH마이홈	☎1600-1004
NH농협생명	☎1544-4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NH농협은행	☎1588-2100
NH농협카드콜센터	☎1644-4000
SH	☎1600-3456
Sh수협은행	☎1588-1515
Wee 프로젝트 특임센터	☎043-530-9182, 9184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경기케어센터	☎031-359-0515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주요기관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국세청 콜센터	☎126
국토교통부	☎1599-0001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디딤씨앗지원단	☎02-790-0786
롯데카드	☎1899-4282
문화누리카드콜센터	☎1544-34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훈원	☎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
산림조합	☎02-3434-7222
산림청	☎1588-3249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1577-0900
삼성카드	☎1566-3336
삼성화재	☎1588-5114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수협공제보험 고객센터	☎1588-4119

주요기관	연락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시간제 보육 콜센터	☎1661-9361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	☎1577-2514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예듀콜센터	☎1544-0079
여성가족부	☎02-2100-600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3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우리은행	☎1588-5000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장애인보조기구센터	☎1670-552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청소년전화	☎1388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코레일	☎1544-7788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043-530-9481
태백케어센터	☎033-580-5200

주요기관	연락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21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290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정보화교육	☎053-230-1392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
해양수산부	☎044-200-5733~4
행정안전부	☎02-2100-3399
현대해상	☎1588-5656
환경부	☎1577-8866

펴낸곳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
범부처정보지원부

인쇄 2019년 5월

디자인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